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노금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정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이 바이오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.
-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 소재·부품·장비(이하 바이오 소부장) 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,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바이오산업 정의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 확대(안 제2조)
- 나.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항목에 디지털의료제품 및 첨단재생의료 사업 명시(안 제13조제1항제2호)
- 다.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13조제1항제5호)

5. 검토내용

- 본 조례안은 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정 등 바이오산업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, 바이오산업의 정의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명시하고, 디지털의료제품 및 첨단재생의료를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며, 바이오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최근 디지털 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,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 소부장은 기술 자립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.
- 이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의 확장 및 지원 근거의 명확화는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에 실효성을 부여하고,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사업화·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안 예고('25. 6. 2.~'25.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, 개정의 타당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특히, 디지털의료제품과 바이오 소부장 등 신성장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산업 육성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, 지역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